

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동윤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4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

발의의원 : 신동윤 의원

김보경 의원, 박영동 의원

1. 제안이유

「지역보건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,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수료에 대해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규정에 대한 위임 근거 명시(안 제1조, 제12조제1항, 별표 2)

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”를 “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”를 “규정하고, 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수수료”를 “수수료(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○ 증명 발급 수수료 (제12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금 액	비 고
1. 건강 진단서	1통	500	
2. 운전면허 적성검사	1통	500	
3. 의료기록사본(x-선)발급	1통	3,000	
4. 증명서 재(추가)발급	1통	500	
5.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	1통	3,000	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에 따른 수수료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,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,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<u>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12조(증명발급 수수료) ① 각종 증명발급 <u>수수료</u>는 별표2에 따라 징수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등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규정하고, 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12조(증명발급 수수료) ① ----- --- <u>수수료(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)</u>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2]</p> <p>○ 증명 발급 수수료 (제12조 관련) (단위: 원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준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금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건강진단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통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0</td> </tr> <tr> <td>2. 운전면허 적성검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통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0</td> </tr> <tr> <td>3. 의료기록사본(X-선) 발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통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,000</td> </tr> <tr> <td>4. 증명서 재(추가)발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통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0</td> </tr> <tr> <td>5.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통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기준	금 액	1. 건강진단서	1통	500	2. 운전면허 적성검사	1통	500	3. 의료기록사본(X-선) 발급	1통	3,000	4. 증명서 재(추가)발급	1통	500	5.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	1통	3,000	<p>[별표 2]</p> <p>○ 증명 발급 수수료 (제12조 관련) (단위: 원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준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금 액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건강진단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통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. 질병진단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통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. 의료기록사본(X-선) 발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통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,0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. 증명서 재(추가)발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통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.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통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 분	기준	금 액	비 고	1. 건강진단서	1통	500		2. 질병진단서	1통	500		3. 의료기록사본(X-선) 발급	1통	3,000		4. 증명서 재(추가)발급	1통	500		5.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	1통	3,000	「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
구 분	기준	금 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건강진단서	1통	5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운전면허 적성검사	1통	5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의료기록사본(X-선) 발급	1통	3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증명서 재(추가)발급	1통	5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.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	1통	3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기준	금 액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건강진단서	1통	5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질병진단서	1통	5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의료기록사본(X-선) 발급	1통	3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증명서 재(추가)발급	1통	5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.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	1통	3,000	「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□ 「식품위생법(법률)」(2024.2.20. 일부개정, 2025.2.21. 시행)

제40조(건강진단)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.

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역보건법(법률)」(2024.1.2. 일부개정, 2024.7.3. 시행)

제25조(수수료 등)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,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역보건법 시행규칙(보건복지부령)」(2023.12.14. 일부개정, 2024.6.15. 시행)

제10조(수수료 등)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9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.

□ 「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(총리령)」(2024.11.22. 타법개정,
2024.11.23. 시행)

제5조(수수료)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